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2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시각장애인 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확대(안 제2조)

- 1) 현행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 2) 확대 : 현행 +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영주 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인 장애인과 그 가족

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안 제6조)

- 1) 인용조문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2)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감면기간 추가 연장

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9조의2·별표)

- 1) 대상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 2) 임대기간
 - (가) 3개월 이상
 - (나) 3개월 초과 시 5퍼센트 인하율 가산
3개월 미만 시 월할 계산
- 3) 감면율 : 10퍼센트~50퍼센트(5퍼센트 단위 구간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제78조의3, 「지방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3. 18.~4. 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제1항”을 “제1항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5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6항”으로 한다.

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일 것. 다만, 공동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나.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별표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균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p> <p>1.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p> <p>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p> <p>1.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p> <p>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일 것. 다만, 공동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p>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일 것

② (생략)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나.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신 설>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별표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별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제9조의2 관련)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

비고

1.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text{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월 수} \div 3$$

2.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text{보증금} \times \text{이자율} \div 12\text{개월}$$